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서

1. 발의자(조합원) 인적사항 및 소유권 현황

발의자 성명	연 락 처	
현 주 소		
소유권현황		

2. 본인은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인 전문관리인 선출 등과 등기를 내기 위한 상정안건 등인 총회소집 요구에 대한 안건에 발의하며, 전문관리인 선출 등과 등기를 내기 위한 상정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및 회의진행절차 등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로 아래 조합원을 발의자 대표로 정하고 조합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데 동의합니다.

성 명	박 정 근	연 락 처	010-9559-2782	
현 주 소	인천시 중구 운남서로 7 영종자이 아파트 104동 1802호			
소유권현황 서울시 중구 만리동 2가 194-55호				

-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
- 4. 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 사유 : 조합집행부가 2017.8. 7.준공 후부터 3년 이상 동안 관리처분계획변경지연으로 조합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조합원간의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과 등기지연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를 내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이후 이전고시 등의 업무가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아파트의 개별소유권이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인 선임 등총회안건에 결의를 함으로써 조합 및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5. 임시총회 목적사항 안건

- 제1호 안건 : 전문관리인 선임의 건

- 제2호 안건 : 1호, 2호 안건 가결 시에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관리처분계획안의 정비사업비내에서 총회비용과 2020년 사업비 예산 승인 및 지출 예산승인의 건

- 제4호 안건 : 2019년 6월29일 선출총회 이후의 모든 조합총회에서 상정되어 해임 가결되었다고 한 모든 협력업체(정비업체 루비콘, 법무법인 법조, 법무세무법인 이레 등) 등에 대한 모든 총회 결의 취소의 건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0. . .

위 발의자

(인감날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문관리인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 발의자 대표 귀중